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직과목(교육실습 포함) 면제 신청 안내

1. 관련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2.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자 중 교직과목(교육실습 포함) 면제를 희망하는 자(상담심리전공 제외)

3. 신청 및 면제 기준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과목 수	학점 수	과목 수	학점 수	과목 수	학점 수
6	12	4	6	2	4

*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안내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교직과목 면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영역별 면제 기준

교직영역	대상 전공	대상자	업무 경력(1년 이상) 기준
교직과목	전체 전공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해당 없음)
교육실습	전체 전공	산학겸임교사 등(명예 교사 제외)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 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 한함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 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 확정
	사서교육전공	사서 자격증 소지자 (근거: 「도서관법」 제43조)	1. 아래의 '2. 대상 기관' 중에서 사서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2. 대상 기관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라.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영양교육전공	영양사 면허 소지자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1. 아래의 '2. 대상 기관' 중에서 영양사 면허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2. 대상 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경력 포함('경력인정 증명서' 제출) 4. 위 3의 '경력인정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예약 서류 및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나. 영역별 세부 기준

1) 교직과목

- 가) 2급 이상 교원자격증은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자격증만 가능
- 나) 2급 이상 교원자격증과 현 소속의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는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됨

2) 교육실습

- 가) 업무경력은 '소지 자격증 취득일 후 ~ 상명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 전'의 1년 이상 업무 경력으로 함
- 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 1년 이상 업무 기간 확인
 - (2) 소지 자격증과 관련 업무 여부 확인
 - (3) 기관장 직인 포함

4. 신청 기간: 2026. 6. 15.(월)~6. 18.(목)

5. 신청 방법

가. 교직과목 면제

- 1) 메뉴: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교직과목 이수면제 신청]
- 2) 방법: '클릭' 버튼 클릭 → 파일 업로드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 3) 서류: 신청서, 교원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교원자격증 취득 학교)
- 4) 파일: 3종 서류를 1개의 파일로 병합하고 파일명은 '전공명_학번_성명'으로 함

나. 교육실습 면제

- 1) 메뉴: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교육실습 면제 신청]
- 2) 방법: '관련첨부파일' 버튼 클릭 → 파일 업로드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 3) 서류: 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소지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인정증명서)
- 4) 파일: 3종 서류를 1개의 파일로 병합하고 파일명은 '전공명_학번_성명'으로 함

6. 기타사항

제출한 신청서는 추후 개최되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되며, 심의 후 대학원교학팀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7. 문의처: 대학원교학팀(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 02-2287-6432)